

공 시 송 달 공 고

[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]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9조(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) 및 제50조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태료)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(등기) 하였으나, '폐문부재', '수취인불명'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1. **공고제목:**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
- 2. **법적근거:**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제84조
- 3. **공고기간:** 2026. 9. 11. ~ 2026. 9. 30.
- 4. **공고방법:**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5. **공고 대상 및 내용**

성명(법인명)	차량번호	주 소	위반내용	위반 일시 및 장소	처분내용
이*수	경기파주*69*3	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20*, 71*동 1*0*호 (와*동,)	「자동차관리법」 제50조 위반 (등화장치 착색필름 부착)	2026. 6. 7. (파주시 동패동 1781)	과태료 3만원

6. 안내사항

- 가.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2026. 9. 30. (수)까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(☎031-940-5783)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납부기한(공고기간)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(공고기간)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/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/1,000의 증가산금이 5년까지(최대 75%)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(☎031-940-578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9. 11.

파 주 시 장